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2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2월 2일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066호)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창의적 대안 제시가 위축될 소지가 있고 발주청의 대안 적용여부에도 상당한 중압감이 예상되므로 위원회 기능에 검토 기능을 추가하고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함. (안 제2조제2항제3호)
-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검토기능을 추가하고 검토대상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3.(생략)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신 설>	③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u> 1. <u>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u> 2. <u>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제6조(소위원회) ① (생략) 1. ~ 4. (생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u>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 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u>